# 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7 제출년월일 : 2014. 9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일단의 토지가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결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(송정-호명지구, 회동-평안지구)

- 송정-호명지구 : 16필지

- 회동-평안지구 : 2필지(지적재조사사업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"붙임"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14.8.1~8.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, 원안동의

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

### 평창군 읍 • 면 •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읍ㆍ면ㆍ리"를 "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"로 한다.

별표 중 미탄면란 및 진부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]

#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 (제2조 관련)

읍면명	리명칭	구 역
	창 리 율치리 회동리	종래 창 리 일원 종래 율치리 일원 종래 회동리 일원 1-129(기존 평안리 6-22번지에서 회동리로 경계조정 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.)번지추가, 1-43번지 제외
미탄면	평안리	종래 평안리 일원 6-30(기존 회동리 1-43번지에서 평안리로 경계조정 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.)번지 추가, 6-22번 지 제외
	백운리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수청리	종래 백운리 일원 종래 한탄리 일원 종래 기화리 일원 종래 마하리 일원 종래 수청리 일원
	하진부리 상진부리	종래 하진부 일원 종래 상진부리 일원과 종래 송정리 중 1306-1, 1306-2, 1306-3, 1306-4, 1306-5, 1306-6 1306-7, 1306-8, 1306-9, 1306-10, 1306-12, 1306-13, 1306-16, 1306-17, 1306-18, 1306-19, 1306-20, 1306-21, 1306-22, 1306-23, 1306-24, 1306-25, 1306-26, 1306-27, 1306-28, 1306-29, 1306-30, 1306-31, 1306-36, 1306-37, 1306-38, 1306-39, 1306-40, 1306-41, 1306-42, 1306-43, 1306-44, 1306-48, 1306-49, 1306-50, 1306-51, 1306-52, 1306-53, 1306-54, 1306-55, 1306-56, 1306-77, 1306-72, 1306-73, 1306-74, 1306-75, 1306-76, 1306-77, 1306-78, 1306-79, 1306-80번지 지역
진부면	호 명 리	종래 호명리 일원 호명리 969-7, 970-5, 974-5~974-7, 976-8~976-12(기 존 송정리 2451-1, 2451-2, 2450-2~2450-4, 2415-1~ 2415-3, 2415-5, 2415-7번지에서 호명리로 경계조정되

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.)번지 추가, 970-2, 970 -4, 974-3, 974-4, 976-5, 976-7번지 제외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지역 중 1306-1, 1306-2, 1306-3, 1306-4, 1306-5, 1306-6, 1306-7, 1306-8, 1306-9, 1306-10, 1306-12, 1306-13, 1306-16, 1306-17, 1306-18, 1306-19, 1306-20, 1306-21, 1306-22, 1306-23, 1306-24,1306-25, 1306-26, 1306-27, 1306-28, 1306-29, 1306-30, 1306-31, 1306-36, 1306-37, 1306-38, 1306-39, 1306-40, 1306-41, 1306-42, 1306-43, 1306-44, 1306-48, 1306-49,1306-50, 1306-51, 1306-52, 1306-53, 1306-54, 1306-55,1306-56, 1306-57, 1306-58, 1306-60, 1306-66, 1306-69,1306-70, 1306-71, 1306-72, 1306-73, 1306-74, 1306-75,1306-76, 1306-77, 1306-78, 1306-79, 1306-80번지를 제외한 지역 2451-5, 2451-6, 2450-5, 2450-6, 2415-9, 2415-10(기존 호명리 970-2, 970-4, 974-3, 974-4, 976-5, 976-7번지에 서 송정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 임)번지 추가, 2451-1, 2451-2, 2450-2~2450-4, 2415-1~ 2415-3, 2415-5, 2415-7번지 제외 두 일 리 종래 두일리 일워 척 처 리 종래 척처리 일원 탑 동 리 종래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종래 동산리 일워 간 평 리 종래 간평리 일원 상월오개리 종래 상월오개리 일원 거 문 리 종래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종래 신기리 일워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마평리 종래 마평리 일원 수 항 리 종래 수항리 일워 화 의 리 종래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종래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종래 장전리 일원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	제1조(목적)
치법」 <u>제4조제3항·제4항 및</u>	<u>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</u>
제6항의 규정에 의한읍・면・	<u>•면•리</u>
<u>리</u> 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 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 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 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